



검찰
PROSECUTION SERVICE

대검찰청

대변인실 전화 02-3480-2100 / 팩스 02-3480-2704

보도자료
2024. 3. 29.(금)

자료문의 : 형사정책담당관실
전화번호 : 02-3480-2922
주책임자 : 형사정책담당관 장준호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주제로 형사소송법학회와 ‘형사법포럼’ 공동개최

- 형사소송법학회와 대검찰청은 '24. 3. 29.(금) 대검찰청 별관에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24년도 『제1회 형사법포럼』을 공동개최하였습니다.
 - '17년부터 해외 형사법제도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 '형사법아카데미'가 코로나 이후 '23년 재개되어 '가상자산 규율' 등을 주제로 분기마다 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금년부터 '형사법포럼'으로 새롭게 개편되어 형사법제도와 관련한 학술연구 기능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 '22년부터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없게 되어* 재판이 장기화되고, 조직적 사기범죄 등의 실체 규명에도 지장이 초래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등의 개정으로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하여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도록 규정

“주요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의 인정이 오로지 피고인의 주관적인 동의에만 달려있게 되는 경우, ...(중략)...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증거가 제출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된 형사재판 제도는 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수밖에 없다.(모성준, 「빨대사회」中)

- 이에 신속하고 충실한 형사재판절차 회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 주요 발표내용
 - 1부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개정에 따른 실무상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실체진실 발견 저해, 재판지연 등이 초래되고 있는 주요 범죄 유형과 문제 사례 등에 관한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고,
 - 2부에서는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수사단계 피의자 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한 이론적·법체계적 검토를 토대로,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조서의 임의성, 진정성을 전제로 한 증거 활용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 앞으로도 검찰은 형사법포럼을 통해 학계와 실무의 소통을 확대하여 형사사법 제도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I 행사 개요

● 일시 및 장소

- '24. 3. 29.(금) 14:00~18:00, 대검찰청 별관 4층 예그리나홀

● 참석자

- 교수,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생, 검찰 구성원 등 200여 명

● 프로그램

◆ 제1부 <형사소송법 제312조 개정에 따른 실무상 문제점>

사회 : 김희균 교수(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제 : 최윤희 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

토론 : 김응재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리움)

김민규 부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류부곤 교수(경찰대학교 법학과)

◆ 제2부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

사회 : 정응석 교수(서경대학교 공공인재학부)

발제 : 이창온 교수(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 이순욱 교수(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곽준영 변호사(법무법인 웨이브)

김성진 검사(대전지방검찰청)

최준혁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종합 토론

※ 「형사법포럼」은 바람직한 형사사법절차 개선 방안에 관하여 학계와 실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대검찰청이 매 분기 개최하는 학술행사로, 지난 '23. 3. 31. '사법협조자 형벌제재 감면제도'(제1회), '23. 6. 30.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제2회), '23. 9. 8. '가상자산의 규율에 관한 법적 과제'(제3회), '23. 12. 8. '체포·구속제도에 대한 고찰'(제4회)을 주제로 개최하였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12조 개정에 따른 실무상 문제점** (최윤희 검사)

- '22. 1.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부인하기만 하면 피고인 본인뿐만 아니라 공범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그로 인해 피고인신문 및 공범에 대한 증인신문이 수사단계에서의 신문을 그대로 반복하는 방법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 구속피고인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등 재판장기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 ▶ 피해금 300억 원 상당 전세사기 사건에서 공범들에 대한 증인신문 등 재판 진행 중 주범인 구속피고인 4명이 모두 석방된 사례
- ▶ 255억 원대의 횡령 범행 후 국외도주하여 9년 동안 도피하다 강제송환된 사건에서 공범들에 대한 증인신문 등 재판 진행 중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사례
- ▶ 허위입원 보험사기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조서 전부를 내용부인하여 피의자 조사를 그대로 법정에서 반복하게 되어 1년 6개월 이상 1심이 진행 중인 사례

- 주범인 피고인이 개정법을 악용하여 수사 과정에서의 피고인과 공범 진술이 법정에 현출되지 못하도록 하고, 공범들의 진술을 번복시켜 처벌을 면하는 등 실체규명이 곤란해질 우려도 있습니다.

- ▶ 대마 매매 사건에서 매도인 A가 앞서 구속된 매수인 B에게 'A로부터 대마를 구입했다'는 수사 과정 자백의 번복을 요청하면서 B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부동의하고, A의 요청을 승낙한 B가 법정에서 'A로부터 대마를 구입한 적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사례 → B는 위증, A는 위증교사로 각각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

※ 토론자들은 이러한 실무상 문제점의 원인과 현황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함

<토론자 의견>

- ① 개정 형사소송법이 충분한 논의나 사전 준비 없이 급히 개정·시행되면서 재판이 지연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이념으로 하는 형사소송이 변호인의 역량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민사소송화 경향까지 보이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②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인해 범죄혐의 입증에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지 향후 학계와 실무에서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함
- ③ 조서 중에서 내용부인하는 부분을 특정해서 증거능력을 배척하도록 제도화 필요

▣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 (이창은 교수)

- 피의자의 수사 과정 진술은 법정 진술보다 증거가치가 우월하고 대체 불가능한 특성이 있어, **현행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을 허용하고 나아가 의무로까지 해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구금, 변호인 참여, 진술 임의성, 영상녹화 여부 등과 관계없이 **피의자의 의사만으로 피의자의 수사상 진술증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이는 체계 모순적입니다.**
 - 이러한 형사소송법은 독일*, 미국** 등 주요 해외국가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과도한 것으로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독일 : 피고인이 공판에서 수사 과정 진술을 반복할 때는 반복한 수사 과정 진술을 증거로 사용 가능

**미국 : 피고인의 수사 과정 자백 진술은 전문법칙에서 제외 → 증거능력 부여

- 피고인의 일방적인 의견에 따라 피의자의 수사 과정 진술이 법정에서 현출되지 못하여 실체규명이 저해되는 사례가 누적된다면,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 결국 피의자의 수사 과정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진술 당시의 임의성과 진정성이 보장되는 것을 전제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 영상녹화 등을 활용하여 피의자 진술의 임의성·진정성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효율적인 공판 진행이 가능하도록 함이 상당합니다.

※ 토론자들은 피의자의 수사상 진술을 증거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

<토론자 의견>

- ① 영상녹화물을 본증으로 사용하고 영상녹화를 요약한 수사보고를 병행하는 방안
- ② 입증취지를 부인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신문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이후에만 재판부에 현출되도록 하는 방안
- ③ 형사절차의 전자문서화를 계기로 조서의 진정성과 임의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과학적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도 필요